

「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5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6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9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
심사특별위원회(2024년 6월 10일 상정, 6월 10일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회계과장 권혁영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
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
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2024년도 평창군 균유재산 취득 및 처분 3차 변경계획은
 - 건물 취득 : 1건 1동 430.70㎡ 1,350,000천원
- 건물 취득은
 -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 : 1동, 430.7㎡, 1,350,000천원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영옥)

- 1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 또는 1,000㎡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고,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에 따르면 취득에는 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등이 해당됩니다.

- 1건당 처분하는 기준가격은 10억원이상 또는 2,000㎡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이며,

□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준

-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
-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-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-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.

□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
- 「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」은
 건물 취득 : 1건 1동 430.7㎡ 1,350,000천원

-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
 토지는 총 8건으로 31,445㎡, 6,023,688천원이며
 건물은 총 9건으로 11,682.7㎡, 42,038,731천원이 되겠습니다.

- 『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』은

-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¹⁾인 도로 제설제 관리 소홀에

1) 대관령 제설대기소에는 자재창고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평창 및 진부 제설대기소는 빗물과 햇빛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준 미충족으로 2022년

대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, 하진부리 265-3번지 일원에 사업비 1,35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연면적 430.70㎡ 규모의 제설창고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.

- 24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제설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도로 시설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▶ 평창군 제설대기소 현황

구분	자재창고	염수 교반기	염수 저장탱크	자동염수 분사장치	비고
계	1	2	3	2	
평창 제설대기소	-	-	1	-	
진부 제설대기소	-	1	1	1	
대관령 제설대기소	1	1	1	1	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제1항²⁾에 의하면 **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** 본 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4년 제 1회 추경에 1,350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.
- 행정절차상 시기를 일실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 금회 승인으로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행위로 추정 가능한 지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, 공공복리상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³⁾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사후 승인 절차로 위법한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시(2022.12.02.) 시정·주의 처분받음.

2) 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**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** 중기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3) 행정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, 감독청이나 법원의 무효 판정이 없이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힘

- 다만,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이므로 향후에는 심의를 통하여 취득재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《회의록 참조》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 의견 요지 : 《없음》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《없음》

【붙임】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부.

2024년도 제3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예정가격	취득 처분 시기	취득처분사유	비 고 (소유자)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건물취득 합계(1건, 1동)			430.7	1,350,000			
1	대	진부면 하진부리 265-3 외 10필지	430.7	1,350,000	2024	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	